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5. 12 12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조사분석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비

금융투자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이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자료의 대상이 된 회사의 유가증권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조사분석자료의 확정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 서울지점(이하 '회사')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조사분석자료를 승인하고 있음에도 해당 승인 시점을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24시간 매매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매매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 소재 Control Group이 24시간 매매제한 종목을 공지하고 관리할 뿐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내부통제절차도 미비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앞으로는 조사분석자료의 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여,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부터 24시간 매매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조사분석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⑵ 대면회의 등에 대한 기록관리 강화

회사는 계열사와의 정보교류 시 차단대상정보 등의 교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내규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열사와의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화·화상회의의 경우 녹화, 녹취 등의 방식으로, 대면회의의 경우 회의 일시, 상대방, 대화의 주요 내용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전화·화상회의 시에는 차단대상정보의 교류 수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회의·통신 내용을 녹화, 녹취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대면회의 시에는 차단대상정보의 교류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회의 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면회의 시 차단대상정보의 교류 수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누락·오판단 등이 발생할 경우 회의 내용이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아 회사의 사후적인 관리 및 점검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

앞으로는 회의 내용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 등에 대한 기록관리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